

● 제298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3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12. 21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

I. 규칙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용석 의원(대표발의) 외 9명
- 나. 제안일 : 2020. 10. 14.
- 다. 회부일 : 2020. 10. 26.
- 라. 의안번호 : 1908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-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,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4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의회 표결방법과 관련해 기립·거수투표가 어려운 의원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투표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회의 표결방법의 용이성 제고(안 제43조제1항)

- 지방의회 회의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「지방자치법」 제7절 ‘회의’는 표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, 동법 제71조(회의규칙)¹⁾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의회가 회의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.
-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43조제1항은 “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나, 기립표결 시 일부 장애 의원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의원의 경우 기립투표가 불가능하거나 큰 어려움이 있어 투표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.
- 이에 본 개정안은 기립투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의원들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의원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의원의 투표 참여를

1) 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용이하게 함으로써 의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됨.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.	제43조(표결방법) ① _____ _____. _____ _____ 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 —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- 참고로, 국회법과 여타 16개 시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및 기립·거수표결 외의 다른 표결 방법을 규정한 사례가 없으며(붙임 참조),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최초로 장애 의원 등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회 표결방법과 관련해 기립·거수투표가 어려운 의원의 경우 본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투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 투표 참여의 용이성,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1. 국회법

제112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(可否)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2.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

제43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.

3.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

4.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

5.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38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.

6.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31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나,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

7.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

8.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47조 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한다.

9.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

제50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의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

10. 경기도의회 회의규칙

제54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.

11. 강원도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

12.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39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
13.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

제41조(표결 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
14.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43조(방법) ① 표결할 경우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15.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.

16.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46조 (표결방법)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기립·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

17.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18.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

제50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(可否)를 결정한다. 다만,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